



# 제 안 설 명

- 고령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 령 군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한혜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연 구역의 범위 정비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의 금연구역이 당초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에서 ‘30미터 이내 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제1항제5호의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10미터 이내 구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일

건강증진과장 한 혜 연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4. . .	
연월일	(제 회)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자	고령군수 (건강증진과장)
제출연월일	2024. . .

법무팀 심사필

#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 . .

제출자 : 고령군수

## 1.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에 맞게 금연구역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법 제9조제5항” 을 “법 제9조제7항” 으로 수정
  - 조례 같은 항 제5호를 삭제,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 3. 개정안 : 붙임

## 4. 기 타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나. 입법예고 : 예고완료(2024.6.13. ~ 7.3), 특이사항 없음
- 다. 예산관련사항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 평가 완료 (특이사항 없음)
- 마. 규제심사 : 규제사항 해당없음

고령군 조례 제 호

##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u>법 제9조제5항</u>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유아교육법</u>」 및 「<u>영유아보육법</u>」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u>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u></p> <p>6. (생략)</p> <p>②·③ (생략)</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 <u>법 제9조제7항</u>-----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5.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45호, 2023. 8. 16., 일부개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① 삭제<2011. 6. 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

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2. 30., 2023. 8. 16.>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연 락 처	(054)950 - 7912